

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소속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

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8월 17일, 박홍열 의원 외 17명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

(2023년 8월 30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박홍열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현행 「동물보호법」이 전부개정(2022.4.26. 공포, 2023.4.27. 시행)됨에 따라 「동물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 함
- 아울러 동물복지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위원회 신설과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맹견관리를 강화하는 등 「동물보호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여 적절한 동물보호·관리와 동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경상북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4조)
- 동물복지위원회 구성,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~안 제6조)
- 동물등록 제외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~안 제10조)
- 보호동물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3조)
- 보호비용의 지급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7조)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진영)

가.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

- 상위법인 「동물보호법」 전부개정(2022.4.26. 공포, 2023.4.27. 시행)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·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,

나.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는 상위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임.
- 다만, 제2호 및 제3호의 용어 정의에 있어, 같은 조 타 호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상위법상의 근거 조항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- 또한, 제7호 후단의 “동물보호센터를 말한다.”는 용어 의미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 “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”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- 안 제3조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5년 단위 동물복지 계획 수립·시행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,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 및 민간단체에 대한 동물보호 활동 권장과 필요한 지원을 규정함.
- 안 제4조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위원회가 동물복지계획 수립·시행, 동물보호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지정 등 동물의 보호·복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·조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- 안 제5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·부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6조는 위원회 회의의 개의 및 의결 요건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.
- 안 제7조는 법 제1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동물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에 대해서 규정함.
- 안 제8조는 등록대상동물의 예방접종 실시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한 특정 장소 출입 제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, 미이행에 따른 벌칙조항이 부재하여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.
-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가 동물의 구조 또는 보호조치 등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·운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.
- 안 제10조는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절차에 대한 규정으로, 홈페이지 10일 이상 공고 및 공고기간내 신청서 제출, 동물보호센터 지정에 따른 지정서 발급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
-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,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며, 만료 30일 전까지의 재지정 신청을 규정하고 있음.

- 이와 관련하여,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재지정도 연속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한 것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수요가 많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임.
- 안 제11조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시설·인력기준 및 준수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점검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보이나,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없어, 위반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등 조치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- 안 제12조에서는 도지사의 유실·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에 대한 포획·보호조치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였으며,
- 안 제13조에서는 동물의 구호조치시 국가동물보호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함.
- 안 제14조에서는 도지사·동물보호센터장이 동물보호센터의 유실·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·관리 조치토록 의무를 부여했으며,
- 도지사가 공수의료 하여금 보호·관리 중인 동물의 질병·부상을 진료하게 하고, 소속 공무원이 보호·관리상태를 수시로 확인·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안 제15조에서는 포획된 유실·유기동물이 등록된 동물일 경우 도지사가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소유자에게 인계시 구조·보호조치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보이나,
- 다만, 제2항의 “바로” 라는 용어가 해석에 따른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 바, 의미를 명확하게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- 또한, 법 제43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유실·유기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기증·분양할 수 있도록 했으며,
- 유실·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한 후 기증 또는 분양할 것과, 유실·유기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 받은 사람에게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함.
- 아울러, 제7항에서 분양·기증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과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사람으로 한 것은, 동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폭넓게 규정하여 유기·유실 동물 등의 입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16조는 도지사가 피학대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도록 하고,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희망하는 경우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- 도지사의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 청구와 소유자 및 분양받은자의 보호비용 납부를 규정함.
- 또한, 도지사가 법 제43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피학대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도록 했으며, 이 경우 보호조치를 하는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우선 분양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안 제17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물보호센터, 공수의 또는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구조·보호조치에 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,

- 유실·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보호비용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고,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사람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적절하다고 보이나,
- 다만, 제5항의 “비용징수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.” 는 문구는 용어의 명확성 및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“비용징수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” 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- 안 제18조에서는 도지사가 시장·군수에게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보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.
- 안 제19조는 법 제91조에 따라 등록 대상동물의 등록 수수료 감면사항을 규정한 것이며,
- 안 제20조는 도지사가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
다. 종합 검토 결과

- 본 조례안은 「동물보호법」의 전부개정에 맞춰,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,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동물의 보호·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특히,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,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며,
- 본 조례안을 통해 경상북도의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의 방향을 제시하고, 현실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- 아울러,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관련 절차도 적절히 이행하여 조례 전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「없음」

6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7. 수정안의 요지 : 「없음」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「없음」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